



제 433국회 (임시회)
제 2차 교육위원회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대학평의원회 위원 구성 요건의 명확화 >

■ 정을호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6930호)

2026. 4.

교 육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최 선 영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정을호의원 등 20인
2. 제 안 일 : 2026. 2. 20.
3. 회 부 일 : 2026. 2. 23.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학평의위원회 위원 구성에 대하여 해당 대학에 재직 중인 교원·직원·조교 및 재학생, 동문 등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면서도 학교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학교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에 대한 기준이 포괄적이고 모호한 측면이 있어 대학교육기관의 장이나 이사장의 자의적 해석에 따라 위원을 위촉할 우려가 있고, 이로 인해 심의의 공정성과 독립성이 위축될 수 있음.

이에 대학평의위원회 위원 구성 요건 중 학교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을 학생이 추천한 동문으로 보다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대학평의위원회 구성 과정에서 불필요한 논란을 방지하고 그 운영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2제2항).

Ⅲ. 검토의견

가.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은 대학평의원회 위원 구성 요건 중 ‘학교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을 ‘학생이 추천한 동문’으로 변경하여 규정하려는 것임.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9조의2(대학평의원회의 설치 등) ① (생략) ② 대학평의원회는 11명 이상의 평의원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교원, 직원, 조교 및 학생 중에서 각각의 구성단위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으로 구성하되, <u>동문 및 학교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u> 을 포함할 수 있다. 이 경우 어느 하나의 구성단위에 속하는 평의원의 수가 전체 평의원 정수(定數)의 2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③ ~ ⑦ (생략)	제19조의2(대학평의원회의 설치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u>학생이 추천한 동문</u> ----- ----- ----- ----- -----. ③ ~ ⑦ (현행과 같음)

나. 검토의견

- 대학평의원회는 교직원과 학생을 평의원으로 하여 대학 운영 및 발전계획, 학칙 제·개정에 관한 사항 등 학교 운영 및 교육의 중요 사항을 심의하는 대학 내 기구로, 학내 구성원의 다양한 의견을 수

럼하여 학교 행정을 견제하고 의사결정의 민주성을 높이는 역할을 하고 있음.¹⁾

이에 따라 대학평의위원회는 교원, 직원, 조교 및 학생 중에서 각각의 구성단위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으로 구성하고, 어느 하나의 구성단위에 속하는 평의원의 수가 전체 평의원 정수(定數)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현행법은 대학평의위원회의 전문성 및 객관성 제고를 위해 평의원에 학내 인사 외에도 외부인사로 동문 및 학교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도 포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그런데 학교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에 대한 기준이 포괄적이고 모호한 측면이 있어 대학의 장이나 이사장의 자의적 해석에 따라 위원을 위촉할 우려가 있고, 이로 인해 심의의 공정성과 독립성이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실제 대학들의 대학평의위원회 구성을 보면, 동문, 회계사, 기업 대표, 법조인 등 외부 인사가 폭넓게 포함되어 있으나, 이들의 선정 기준이나 추천절차, 이해관계 충돌여부 등이 명확하게 공개되지 않

1) 「고등교육법」 제19조의2(대학평의위원회의 설치 등) ① 학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직원과 학생 등으로 구성되는 대학평의위원회(이하 “대학평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는 자문사항으로 한다.

1. 대학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2.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대학헌장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4.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5. 다른 법률에 따른 학교법인 임원 또는 개방이사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사립학교에 한정한다)
6. 그 밖에 교육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학칙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는 경우가 많음. 즉, 일부 대학의 경우 외부인사에 대한 자의적 위촉이 가능하고, 검증이 어려운 구조가 존재하고 있는 것임.

- 이에 개정안은 ‘동문 및 학교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을 ‘학생이 추천한 동문’으로 보다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대학평의위원회 구성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논란을 방지하고 그 운영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취지에서 제안된 것임.

개정안을 통해 대학평의위원회 위원의 위촉 기준을 명확히 하고 자의적 해석 여지를 줄임으로써 위원 위촉 과정에서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다만, 동문 및 학교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을 학생이 추천한 동문으로 변경할 경우에는 대학평의위원회 위원 구성에서 학생의 대표성이 과다대표될 수 있으며, 다양한 외부 전문성을 확보하는데 제한이 있을 수 있음.

특히 동문 풀이 제한된 대학의 경우 외부전문가 확보를 통한 대학평의위원회의 전문성을 제고하는데 더 큰 제약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 개정안에 대하여 건국대, 서울대, 고려대 등 35개 대학과 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 거점국립대학교총장협의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에서는 대학의 발전을 위해서는 식견을 갖춘 외부 전문가의 영입이 필수적인데 외부인사의 참여를 배제할 경우 심의의 전문성 및 객관성이 약화될 수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임.²⁾

□ 교육부는 대학평의위원회에 동문이 아닌 외부 평의원을 둘 수 있도록 한 취지는 학내 시각에 국한되지 않는 외부 제언을 수렴하고, 대학 운영의 투명성과 개방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므로 개정안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문 의 처
02)6788-5188

2) 다만, 가톨릭상지대, 성공회대, 충남대는 평의원 구성을 동문으로 한정하는 것에 찬성하면서, 동문 추천 주체 및 방식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참고 1

대학평의위원회 구성 현황

□ 국립대학

대학명	교원	직원	조교	재학생	동문 및 학교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		합계
					인원	내용	
강원대	11	4	2	5	-	해당 없음	22
경북대	11	3	1	4	1	총동창회가 추천하는 동문 대표	20
경상국립대	11	5	1	4	1	총동문회장이 추천하는 교외 평의원	22
부산대	10	3	2	4	1	동문단체가 추천하는 동문 대표	20
전남대	10	4	2	3	1	총동창회가 추천하는 동문 대표	20
전북대	11	4	1	5	1	총동창회에서 추천하는 외부인사	22
제주대	6	2	1	3	-	해당 없음	12
충남대	11	4	2	4	1	충남대학교 총동문회 추천	22
충북대	7	3	1	2	2	○총동문회에서 추천하는 졸업생 중 외부인사 1명 ○충청북도지사 또는 청주시장이 추천하는 외부인사 1명	15
국립강릉원주대	8	4	1	3	1	총동문회에서 선출한 동문대표	17
국립경국대	7	3	2	2	-	해당 없음	14
국립공주대	10	5	2	3	1	대학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자로 총장이 추천하는 외부위원	21
국립군산대	8명 이하	4명 이하	2명 이하	2명 이하	-	해당 없음	16명 이내
국립금오공과대	7	3	1	3	-	해당 없음	14
국립목포대	8	4	1	2	1	총장이 추천하는 동문 또는 외부 인사	16
국립목포해양대	7	3	1	3	2	○총동창회 평의원 1명 ○대학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사회 대표 평의원 1명(지역사회 관련 협의회에서 추천)	16
국립부경대	10	5	1	3	1	직원단체 및 총학생회 가 총동창회장과 협의하여 추천하는 외부 동문	20
국립순천대	8	4	1	3	-	해당 없음	16
국립창원대	13	6	2	3	2	○총동창회 이사회에서 추천하는 동문대표 1명 ○ 총장이 동문 중에서 추천하는 학교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외부인사 1명	26
국립한밭대	9	4	2	3	-	해당 없음	18
서울과학기술대	7	4	1	3	-	해당 없음	15

한경국립대	6	4	1	2	-	해당 없음	13
한국교통대	8	3	1	2	2	○총장이 추천하는 외부인사 1명 ○충청북도 도지사가 추천하는 외부인사 1명	16
한국체육대	5	3	1	2	1	총동문회에서 추천한 사람	12
한국해양대	9	5	1	4	-	해당 없음	19
경인교육대	5	3	1	2	-	해당 없음	11
공주교육대	6	3	1	3	-	해당 없음	13
광주교육대	6	3	1	3	-	해당 없음	13
대구교육대	5	3	1	2	-	해당 없음	11
부산교육대	6	3	1	3	-	해당 없음	13
서울교육대	6	3	1	3	-	해당 없음	13
전주교육대	6	3	1	3	-	해당 없음	13
진주교육대	6	3	1	3	-	해당 없음	13
청주교육대	6	3	1	3	-	해당 없음	13
춘천교육대	4	4	2	4	-	해당 없음	14
한국교원대	7	2	1	4	1	동문 및 대학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외부교육전문인 중에서 총장이 추천하는 사람	15
한국방송통신대	8	4	1	2	1	총장이 추천하는 동문 또는 학교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	16

□ 공립대학

대학명	교원	직원	조교	재학생	동문 및 학교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		합계
					인원	내용	
서울시립대	8	4	1	4	1	총동문회에서 선출하는 동문 대표	18
강원도립대	5	2	2	3	-		13
충남도립대	5	3	1	3	1	외부인사 중에서 총장이 추천한 자	13
충북도립대	4	2	2	2	1	외부인사 중에서 총장이 추천한 자	11

□ 사립대학

대학명	교원	직원	조교	재학생	동문 및 학교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		합계
					인원	내용	
연세대	6	3	1	2	7	○동문 3인 ○학부모 2인 ○대학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 2인	19
성균관대	5	2	1	2	2	총장이 위촉	12
경희대	8	5	1	3	4	외부인사 중에서 총동문회장 또는 총장의 추천	21

						을 받은 자	
성신여대	4	2	-	2	4	○ 동문 1명 : 총동창회에서 추천한 자를 총장이 위촉 ○ 대학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 3명 : 외부인사 중에서 총장이 위촉	12
서강대	5	2	1	2	2	동문 평의원 선출 규정에 의해 선출	12
한양대	6	3	1	3	2	○ 대학발전을 위한 인사 1인 : 총장이 추천 ○ 동문 1인 : 총동문회장이 추천	15
충신대	3	2	1	3	3	○ 동문 2인 : 총동창회에서 추천 ○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 1인 : 총장이 위촉	12
단국대	5	3	1	3	1	총장이 위촉	13
용인대	4	3	1	1	2	총장이 추천하여 위촉	11
상지대	5	2	1	2	1	○ 총장이 위촉 ○ 법인이나 상지대학교에 재직 중이거나 직무와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을 위촉 불가	11
중부대	4	3	-	2	3	○ 동문 1인 : 동문회에서 추천한 자 ○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 2인 : 소통협력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영산대	4	3	1	1	2	총장이 위촉	11
포항공대	5	2	-	2	2	교외 인사 중에서 총장이 위촉	11
한동대	5	2	1	1	2	○ 동문 1인 : 동문회에서 추천한 자를 총장이 위촉 ○ 외부 평의원 1인 : 총장이 위촉, 다만 대학교 평의원회에서 추천한 자도 후보에 포함	
조선대	5	3	1	2	2	총동창회에서 추천한 2명	
전주대	5	2	1	1	3	○ 동문 1인 : 총동문회장의 추천을 받은 자 ○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 2인 : 총장의 추천을 받은 자	
목포과학대	5	3	1	2	2	총장이 위촉	